방문판매규준

Procedure

Owner: Head of Compliance, Korea

November 2025, Version 3.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rocedure is to set forth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must be followed in sales activ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vestment solicitation and entering into contracts relating to investment products when sales activities are performed through door-to-door sales and etc.
Scope	Natixis Asia Limited, Seoul Branch
Version	3.0
Policy Owner	Head of Compliance, Korea
Policy Manager	
Approver(s)	Seoul Management Committee
Approval Date	11/19/2025
Effective Date	12/15/2023
Next Review Date	Annually
Related Documents	Global Policy – Suitability and Complaints

Revision History

Version	Date	Description of Revision	Author / Preparer	Reviewer	Approver
1.0	12/15/2023	Establishment according to revision of the Act on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Myung Jin Koo, Head of Compliance, Korea	Heads of Global Markets, Coverage & Real Assets, Korea	Seoul Management Committee
2.0	12/20/2024	No changes. Annual review.	Hyesoo Lee, Compliance, Korea	Heads of Global Markets, Coverage & Real Assets, Korea	Seoul Management Committee
3.0	11/19/2025	Addition of Addendum and format changes to comply with Global Governance Management Framework Policy	Myung Jin Koo, Head of Compliance, Korea		Seoul Management Committee

Ⅰ.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②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 및 제2항,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제1항제6호는 제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한한다.

③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법 시행령.법 감독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및 그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말한다.
2.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를 말한다.
3.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전화로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화상권유판매"란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회사 방문판매인력이 얼굴을 상호 간에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화상을 통해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의 체결을 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7.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말한다.
8.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자본시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계약 체결의 권유만 가능하며 이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0
9.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투자성 상품

나.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Ⅱ. 방문판매인력 관리

제4조(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 방문판매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일 것
2. 방문판매등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였거나 전문인력규정 제3-20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
4. 협회가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할 것

제5조(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 ① 방문판매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문판매 관련 직무윤리 및 판매예절
2. 방문판매 시 준수사항
3.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5. 그 밖에 방문판매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② 직무교육은 방문판매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 연도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① 회사는 [별표1]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방문판매등을 하려는 해당 방문판매인력에 대하여 고객이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명부 상 방문판매인력 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명부 관리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방문판매등을 수행할 때 준수사항

제7조(방문판매등 사전안내)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
2.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3. 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시간·장소
4. 투자권유대행인인 경우 계약체결의 권유만 가능하다는 사실

③ 회사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안내를 받은 고객이 방문판매등을 거절하거나, 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시간·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방문판매등 절차) ①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등이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2.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
3. 고객에게 계약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행사방법 및 절차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3호의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의 과정이 녹취(화상권유판매의 경우 녹화를 말한다)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녹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녹취하기를 거부할 경우 추후 발생한 민원·분쟁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워 권리구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태블릿 PC, 회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소속을 증명하고 취급가능상품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고객이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거나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정보에 대한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12~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7항에 따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방문판매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⑨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를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등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방문판매인력은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등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⑩ 제7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전화권유판매 및 화상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이 직접 자신의 HTS, MTS, 전화녹음방식 등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⑪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에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한 회사의 관리자(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른 책임자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⑫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체결 전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방문판매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류의 교부 등)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계약서류(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2.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③ 방문판매인력은 설명서에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제10조(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계약서류를 사용하여 방문판매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 수행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은 계약서류(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인력은 광고활동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권유대행인의 고지의무 등)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투자권유를 위탁한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사실
3. 자신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6.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회사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7.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8. 고객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고객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2조(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① 회사는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고객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관계법령등과 회사의 투자권유준칙 및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Ⅳ.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등

제13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권유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또는 계약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
2.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 고객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거나, 사후적으로 변조하는 행위
4. 고객으로부터 현금 수취를 하는 행위
5.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이 동의한 범위 외의 목적으로 무단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6. 고객에게 청약의 철회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으로 특정금전신탁을 구성하고 이를 방문판매등으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②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등 관련 계약의 권유를 받은 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
2.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하는 행위.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③ 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위반 적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점검 및 조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대출성 상품에 대한 금지행위) 방문판매인력은 제3조 제1호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대출성 상품을 먼저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① 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수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판매를 유인하거나 상품판매를 조건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금전, 상품권, 투자성 상품 등(이하 '금전등'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판매상품의 가격이나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는 행위
4. 판매상품의 가격이나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원금 또는 발생이자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6. 퇴직연금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여 금전등을 제공하는 행위 (해당 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Ⅴ. 고객의 권리 및 보호

제17조(청약철회의 방법 안내 등) ① 방문판매인력은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사실,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7일 간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제18조(위법계약의 해지 방법 안내) 회사는 법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① 회사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녹취자료 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녹취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고령자에 대한 방문판매등) ①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고령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제외)을 권유 시 숙려기간(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중 위험성 고지 및 녹취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령자에게 회사가 정한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계약서류 등 계약권유의 적정성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방문판매인력이 계약체결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판매인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령자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며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인력은 회사가 정한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초고령자가 스스로 상품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에 대해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서류는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의 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서명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고객(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관계법규등 준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제22조(관계법규등 준수 여부 점검) ①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상품 권유 및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가 관계법규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위법.위규행위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체계 구축)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투자자정보 및 계약서류 관련 위법·부당 취급 여부와 판매 과정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Ⅶ. 기타

제24조(관할법원) ① 방문판매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방문판매인력을 포함한다)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등을 통해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른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그 밖의 사항)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은 법 제16조 및 자본시장법 제50조에 따라 회사에서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투자권유준칙을 따르되, 본 모범규준과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모범규준을 우선으로 한다.

부록

규정 위반 처리 절차

각 직원은 이 규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규준위반은 직속 상관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로 보고된다. 모든 위반 사항은 조사를 거쳐 필요시 Global Conduct Framework 에 따라 APAC Conduct Committee 에 위반 사항으로 보고되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서울경영위원회에도 보고된다. 위반 사항에 따라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규정 승인 및 검토 주기

이 규준 초기 발행에 대한 승인자는 서울경영위원회이다. 이후 이 규준은 최소한 연 1 회 검토되며, 서울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1]

방문판매인력 명부

▣ 방문판매인력 정보

소속회사:

성명:

연락처:

이메일:

▣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현황

금융투자전문인력 ( )	종류 : 등록일 : 종류 : 등록일 : 종류 : 등록일 :
투자권유대행인 ( )	종류 : 등록일 : 종류 : 등록일 : 종류 : 등록일 : ※ 상품의 계약 체결은 불가하고, 투자권유만 가능함

▣ 교육 이수 현황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	이수 여부 ( ) 이수 일자 :
직무교육	이수 여부 ( ) 이수 일자 :